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105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접수 제17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 C에 대한 채권을 E 주식회사에게 2003. 2. 19.에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2010. 10. 20.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2013. 10. 11.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2013. 12. 30.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6551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8. 'C는 주식회사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317,094원 및 그 중 27,289,536원에 대하여 200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5. 11. 21. H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H은 2009. 7. 10.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C(법정상속분 3/9)와 자녀들인 I, J, 피고(법정상속분 각 2/9)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위 상속인들은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위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접수 제1796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2009.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09. 7.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21.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9. 3. 26.에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은 2021.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2009.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실제로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날은 2019. 3. 26.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9. 3. 26.부터 5년 내인 2021. 2. 10.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행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었던 2019. 3. 26.에 채무자인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도봉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의 없고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하는 등 특별히 기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몫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기여분이 있다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9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접수 제17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